

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57,199,289	22,715,979
일반회계	669,450,314	20,083,509
특별회계	87,748,975	2,632,469
공기업특별회계	69,019,684	2,070,591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47,725,132	1,431,754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1,294,552	638,837
기타특별회계	18,729,291	561,879
농어촌뉴타운특별회계	726,722	21,802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1,711,600	51,34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9,811	894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389,577	41,687
농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4,134,132	124,024
자활기금특별회계	769,813	23,094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280,387	38,412
주차장사업특별회계	946,140	28,384
수질개선특별회계	7,741,109	232,233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4,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321억원으로 한다.

제 8 조 다음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 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무활동경비 3.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4.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제 9 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전액 보조금, 특별교부세, 재정인센티브, 특정목적기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